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허가 대상

-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효기간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 지상파DMB 방송국	2016. 12. 31.
(주)KNN	KNN 지상파DMB 방송국	2016. 12. 31.
(주)광주방송	KBC 지상파DMB 방송국	2016. 12. 31.
(주)대구방송	TBC 지상파DMB 방송국	2016. 12. 31.
(주)강원민방	G1 지상파DMB 방송국	2016. 12. 31.
(주)제주방송	JIBS 지상파DMB 방송국	2016. 12. 31.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2016. 6. 30.)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제출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 :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54, jessica@kcc.go.kr)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회 (9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담당 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0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20점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80점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계	1,000점

□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2016년 6월말 : 재허가 신청서 접수
- 2016년 7월~11월 :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
- 2016년 10월~11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6년 11월 :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재허가 심사기간 중 법인 합병, 변경허가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완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